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생환 의원 외 24명
- 나. 의안번호: 제1068호
- 다. 발의일자: 2019. 10. 16.
- 라. 회부일자: 2019. 10. 22.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 요 내 용

- 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사업비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다. 국제 연대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없음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6.6.4) 및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하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5대 중점 추진과제

- ▲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 ▲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 “프로슈머”는 생산자 또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립국어원¹⁾에서는 “참여형 소비자”로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고 있으므로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1)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korean.go.kr>, 2019년 12월 10일 최종접속)

- 안 제8조 중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제9조	<u>프로슈머</u>	<u>참여형 소비자</u>
제5조제2항	<u>에너지데이터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스템</u>	<u>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u>
제8조	시장은 <u>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운영현황을 제6조제4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에너지 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 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	<u>행· 재정적</u>	<u>행정적, 재정적</u>